

보 도 자 료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 및 삭제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형실효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2018헌가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헌제청]

[선 고]

헌법재판소는 2021년 6월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과 삭제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은 구 형실효법 제8조의2 제1항, 제3항 및 현행 형실효법 제8조의2 제1항, 제3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당사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



2021. 6. 24.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 사건개요

- 당해사건 원고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창원지방법원 검찰청 검사로부터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고, 2002. 3.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위 소년보호사건에 대하여 불처분결정을 받았다.
- 당해사건 원고는 2016. 4. 18. 수사경력자료를 관리하는 경찰청장에게 위 소년부송치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삭제를 신청하였으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삭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2016. 5. 18. 경찰청장을 상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 서울행정법원은 위 소송 계속 중, 직권으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와 보존기간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1호로 개정되고, 2021. 3. 16. 법률 제17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및 제3항(이하 ‘이 사건 구법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 현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및 제3항(이하 ‘이 사건 현행법 조항’이라 한다)도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와 보존기간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것에 변함이 없고, 위헌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구법 조항과 결론을 같이 할 것이 명백하므로, 심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구법 조항>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1호로 개정되고, 2021. 3. 16. 법률 제17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

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2.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처분 당시 또는 판결·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 제1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
 2. 제1항 제1호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
 3. 제1항 제2호의 판결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결정: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

<이 사건 현행법 조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21. 3. 16. 법률 제17937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2.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3.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제2호의 불송치결정·불기소처분 당시 또는 같은 항 제3호·제4호의 판결·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 제1호의 불송치결정: 그 결정일부터 4개월
 2. 제1항 제2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

3. 제1항 제2호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
4. 제1항 제3호의 판결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결정: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

[관련조항]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1호로 개정되고, 2021. 3. 16. 법률 제17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1.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1.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 제1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 제2호·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21. 3. 16. 법률 제1793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

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는 날이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 제1호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는 6개월간 보존하고, 제1항 제2호의 기소유예나 제1항 제3호·제4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 결정주문

1.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1호로 개정되고, 2021. 3. 16. 법률 제17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및 제3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21. 3. 16. 법률 제17937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 제1항 및 제3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3. 6. 30.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 이유의 요지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 적극

- 심판대상조항은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과 삭제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소년부송치된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아, 해당 수사경력자료는 당사자의 사망시까지 보존되고, 일정한 경우 이용되고 있다.
- 사후 재수사의 기초자료나 다른 사건의 양형자료 등으로 이용할 것에 대비하여 수사경력자료의 보존이 필요하므로, 법원에서 불처분결정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보존기간과 삭제를 규정하지 않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

- 하지만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형사재판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는 절차를 마련한 소년법의 취지에 비추어, 법원에서 소년부송치된 사건을 심리한 후 보호 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불처분결정을 하는 경우, 그러한 전력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 어떤 범죄가 행해진 후 시간이 흐를수록 수사의 단서로서나 상습성 판단자료, 양형자료로서의 가치가 감소하므로, 해당 사건의 경중이나 결정 이후 경과한 시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당사자가 사망할 때까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보존된 수사경력자료를 조회하거나 회보받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통해 추구하는 실체적 진실발견과 형사사법의 정의구현에 기여하는 정도나 필요성보다, 그로 인해 당사자가 입을 수 있는 실질적 또는 심리적 불이익과 그로 인한 재사회화 및 사회복귀의 어려움이 더 크다.
-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과 삭제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이 사건 구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소년부송치 후 불처분결정을 받은 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참고 >

-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후 작성되는 수사자료표 중 ‘수사경력자료’는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 등 범죄경력자료 이외의 자료를 의미하는데, 이 자료에는 당사자의 지문정보와 인적사항, 죄명, 입건관서, 처분 결과 등의 정보가 기재된다.
- 형실효법은 제8조의2 제1항에 수사경력자료의 삭제에 대한 규정을, 제2항에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면서, 제3항에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성인의 경우보다 단축한 규정을 두었다. 그럼에도 위 규정에서 소년에 대하여 검사가 소년부송치 처분을 한 사건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아, 해당 수사경력자료가 당사자의 사망시까지 보존되고, 형실효법 및 시행령이 정한 일정한 경우 조회 및 회보가 가능하다.
- 현행 제도 하에서는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되는 사건에 대

한 법원의 결정이 수사기관에 통지되지 않고, 수사경력자료에도 ‘소년보호사건’ 으로만 소년부송치된 사실이 기재될 뿐이다.

- 검사가 소년부송치 처분을 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심리불개시결정, 불처분결정, 보호처분결정, 검사에의 송치결정, 법원으로의 이송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 의 수사경력자료로 한정하여 위헌 여부를 판단하였다.

□ 결정의 의의

- 형실효법이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의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삭제 및 보존기간의 규정을 두지 않아, 당사자의 사망시까지 소년부송치되었다는 내용의 수사경력자료가 보존되는 것은 당사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다.
-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경우 수사경력자료의 삭제 및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에 대한 근거규정이 사라지게 되고, 위헌성 제거의 방식에는 입법자의 재량이 인정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 이 사건 구법 조항은 이미 개정되었지만, 당해사건에는 여전히 적용되므로 당해사건 원고의 구제를 위해 그 적용을 중지하고, 이 사건 현행법 조항은 계속 적용을 명하되, 입법자는 늦어도 2023. 6. 30.까지 개선입법을 이행하여야 한다.